



농림축산식품부

보도자료

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정아름, 서기관 안종현(044-201-1364) / 제공일 : 12월 8일(총 5매)

농업! 미래성장산업의 새로운 심장!

농식품부 소관 법률안 12건 국회 본회의 통과

- 수입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, 육묘산업 제도권 편입,
농협사업구조개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개선 이루어져 -

- 수입 돼지고기에 대한 이력제가 도입되고, 육묘산업이 근거 법률 마련을 통해 제도권으로 편입되며, 농협사업구조개편과 관련된 제도가 개선된다.
- 농림축산식품부(장관 김재수)는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총 12건의 소관 법률안이 12월 8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.
- 주요 개정 법률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.
-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,
 - 그동안 이력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수입 돼지고기에 대해서도 이력제를 도입하기로 하였다. 단, 시스템 구축 등 충분한 준비 작업을 통해 공포 후 2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할 계획이다.

- '15년 현재 전체 돼지고기 유통량의 29.8%를 차지하는 수입 돼지고기에 대해 이력제가 도입되면 소비자 보호와 알 권리 보장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.

□ 종자산업법 개정안은,

- 육묘업 등록제, 유통묘 품질표시 의무화, 묘 관련 분쟁해결 근거 등을 새로이 도입하여,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“묘”를 종자와 같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.

- 이에 따라 종자산업이 기존의 종자업 뿐만 아니라 육묘업까지 확대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으며, 묘와 관련된 농업인 피해와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□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,

- 중앙회의 경우, 농협사업구조개편과 관련하여 경제사업 수행 주체를 중앙회에서 경제지주로 변경하고 중앙회와 농협경제 지주의 조직 구조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다. 또한, 감사 위원장을 외부 감사위원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였다.

- 일선 조합에 대해서는, 방카슈랑스 적용 유예를 추가로 5년 연장하였으며, 정당한 사유 없이 경제사업을 2년 이상 이용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해 총회 의결을 통해 제명할 수 있도록 하고, 조합 임원은 조합의 판매사업 이용 실적을 갖추도록 하였다.

- 이 밖에도, 동물 복지 강화를 위해 수의사가 아닌 자의 무면허 동물 진료행위에 대한 벌금액을 1천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상향하였으며,(수의사법)

- 농어촌정비사업 시행 시 토지·물건의 수용·사용 외에 장애물의 제거·변경도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고, 지상 또는 지하에 대한 구분지상권 설정 근거를 마련하는 등 농어촌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였다.(농어촌정비법)

-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은 “금번 법률개정 및 제도개선 사항들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 등 철저한 준비를 하겠으며, 앞으로도 필요한 법·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.”고 밝혔다.

* 법률제명은 약칭으로 표시하였음

연번	법률명	주요내용 및 시행일	담당부서
1	농어촌공사법	○농어촌공사의 가축분뇨처리시설 사업근거 마련, 어촌종합개발, 어촌지역산업진흥 및 개발, 양식 어업기반 조성 및 내수면 수산자원조성 및 유어기반 정비 사업에 대한 근거 마련 등 ○시행일 : 공포일	농촌정책과 (044-201-1512)
2	간척지법	○간척지 활용사업구역에서 수상동식물의 포획·양식, 식물재배 등 행위제한 사항 삭제 ○시행일 : 공포 후 3개월	간척지농업과 (044-201-1877)
3	농어촌정비법	①농업생산기반시설의 ‘목적 외 사용’ 명칭을 ‘사용허가로 변경, ②정비사업 시행시 토지·물건의 수용·사용 외에 장애물의 제거·변경도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절차 이행하도록 근거 마련, 지상 또는 지하에 대한 구분지상권 설정 근거 신설 ○시행일 : 공포일(①은 공포 후 6개월)	농업기반과 (044-201-1855)
4	농업협동조합법	○농협 사업구조개편 완료에 따른 후속조치 - 중앙회 임원 중 농업경제대표이사, 축산경제대표이사를 폐지, 중앙회 감사위원장 자격을 외부전문가인 감사위원으로 제한, 경제지주의 대표이사 및 축경대표 선임 규정 개정 등 - 지역농협 보험특례 5년 연장(퇴직연금 판매제한도 동일하게 연장) ○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일선조합 제도개선 사항 반영 -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에 ‘경제사업(판매사업) 미이용’ 추가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조합은 상임감사(감사 2인 중 1인은 외부전문가) 도입 의무화 등 ○시행일 : 2017.1.1.(시행령 위임조항은 공포 후 1년)	농업금융정책과 (044-201-1757)
5	수의사법	○무면허 진료행위 시 벌금형 상향(1천만원 이하 →2천만원 이하) ○시행일 : 공포 후 6개월	방역총괄과 (044-201-2352)

연번	법률명	주요내용 및 시행일	담당부서
6	축산물이력법	①수입돼지고기 이력제 도입, ②'식육즉석판매 가공업자'를 이력관리 대상에 추가, 식품접객 업자 등의 수입쇠고기 구매영수증 보관기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, 위해축산물 판매 차단 시스템 구축 인증제 폐지 ○시행일 : 공포 후 6개월(①은 공포 후 2년)	방역총괄과 (044-201-2362)
7	종자산업법	①법 규율 대상에 “묘”에 관한 사항 추가 및 육묘업 등록제 신설, 유통묘 품질표시 의무화, 육묘 분쟁해결 근거 및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근거 마련, ②정부보급종 종자의 생산대행 자격을 농업인에서 농업경영체로 확대, 종자검정 실시 근거 마련 등 ○시행일 : 공포 후 1년(②는 공포 후 6개월)	종자생명산업과 (044-201-2479)
8	사방사업법	○사방협회 업무위탁 법적근거 명확화, 협회 임직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, 벌금액 현실화 ○시행일 : 공포한 날	산림청 산사태방지고 (042-481-4033)
9	산림보호법	○야영장 등에서 흡연금지, 나무의사·수목치료 기술자 자격제도 도입, 나무병원 등록 및 취소, 한국나무의사협회 설립, 산림보호구역 지정 고지대상 확대,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시설의 명확화 및 지정해제 후 재지정 근거, 산림 유전자원보호구역 한시적 해제, 벌금액 현실화 ○시행일 : 공포 후 1년 6개월	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 (042-481-4076)
10	산림조합법	○비회원에 대한 대출취급을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,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 중앙회 목적사업 추가, 조합원 탈퇴 및 임원의 결격사유 변경, 선거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한 벌금형 분리 선고 의무화, 벌금액 현실화 ○시행일 : 공포 후 3개월	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(042-481-4155)
11	산림휴양법	○형법에 따른 성범죄 중 누락된 조문 추가, 자연휴양림등 조성시 산림에 둘러싸인 비산림 토지 포함, 사유 자연휴양림 휴식년제 실시권자에 특별자치시장 추가, 유기징역 상한 규정 및 벌금액 현실화 ○시행일 : 공포 후 6개월	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 (042-481-4211)
12	산림조합개선법	○사문화된 과태료 부과·징수 절차 규정 삭제 및 벌금액 현실화 ○시행일 : 공포 후 6개월	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(042-481-4155)